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0,737,714	24,922,131
일반회계		698,115,984	20,943,480
특별회계		132,621,730	3,978,652
	공기업특별회계	110,429,279	3,312,8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310,938	699,32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118,341	2,613,550
	기타특별회계	22,192,451	665,7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0,722	37,5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3,959	23,819
	주차장특별회계	4,526,703	135,801
	수질개선특별회계	15,621,067	468,63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50,21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